

사고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 푸는 방법

악질적인 사기범행인 보이스피싱은 돈을 입금한 직접적인 피해자의 피해도 엄청나지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타인명의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의 명의인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있어서 상당한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은 통장의 명의자가 사기죄의 공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인으로 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사고계좌등록이 되어 통장지급정지를 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계좌등록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시키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사기를 당해서 입금한 피해 금액을 일단은 급박하게 묶어놓아서 피해를 가능한 한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장지급정지를 당한 사람은 사기나 범죄와 연관이 된 것인 줄 모르고 엮이게 된 것임에도 전자금 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고계좌등록이 되어서 상당한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감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고계좌로 등록이 되어서 계좌지급정지의 상황에 놓인 자가 지 급정지상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엮이게 되는 유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되는 유형 중 <u>첫째는 바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u>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피해금액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전봇대, 길거리 등에 <u>통장을 빌려주면 일정한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탓에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주었다가</u>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입니다.

둘째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대출을 받기가 힘든 상황에 힘든 사람들을 무작위 광고 등으로 유인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기들이 계좌에 돈을 잠시만 입금한 후에 다시 인출할 것이니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자는 대출도 받지 못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받게 됩니다.

》 셋째로 3자간 사기에 엮이는 경우입니다. 중고거래 어플 등에 물건을 팔겠다고 한 사람에게 물건을 사겠다고 하고 수락이 되면 통장명의자의 계좌로 물건값이 입금됩니다. 이후에는 직거래로 사기꾼은 물건을 받아 가는데요.

그런데 사실 명의자에게 <u>입금이 된 물건값은 사기꾼이 어떤 물건을 팔겠다고 허위로 올린 후 이를 사겠다</u> 고 한 사람이 나타나면 명의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탓에 입금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은 물건값을 내지 않고도 물건을 받아가고 사기꾼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돈을 입금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며, **사기꾼에게 물건을 판 명의자는 억울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했을 뿐인데 별안간 본인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다른 은행 계좌들의 비대면거래도 모두 정지되었다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게 된 사실을 경찰서와 금융기관에서 인지하게 되어 그 명의자인 본인의 계좌를 사고 계좌로 거래정지 시켰다는 상황입니다.

66

본인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고계좌로 등록된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사건 당사자라면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거래정지되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본인은 바로보이스피싱 사건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미 가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사건마다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대출이나 알바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거나 은행인출이나 이체를 해준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하는 인출이 아닌, 빗썸이나 코빗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방식을 이용한 이체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은행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었다는 의미는 전화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누군가가 이미 본인을 사기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미 그 때에는 본인의 은행계좌로는 이미 적게는 수 백만원 부터 많게는 수 천만원 이상까지 돈이 입금된 후 출금된 상황일 것인데요.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들의 입금 명의자들이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자들인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게 피해를 입었지만, 그 사기일당에 대하여는 신분이나 연락처를 알 수가 없기에 당연한 수순으로 자신들이 돈을 보낸 은행계좌 명의자를 신고했다고 볼 수있습니다.